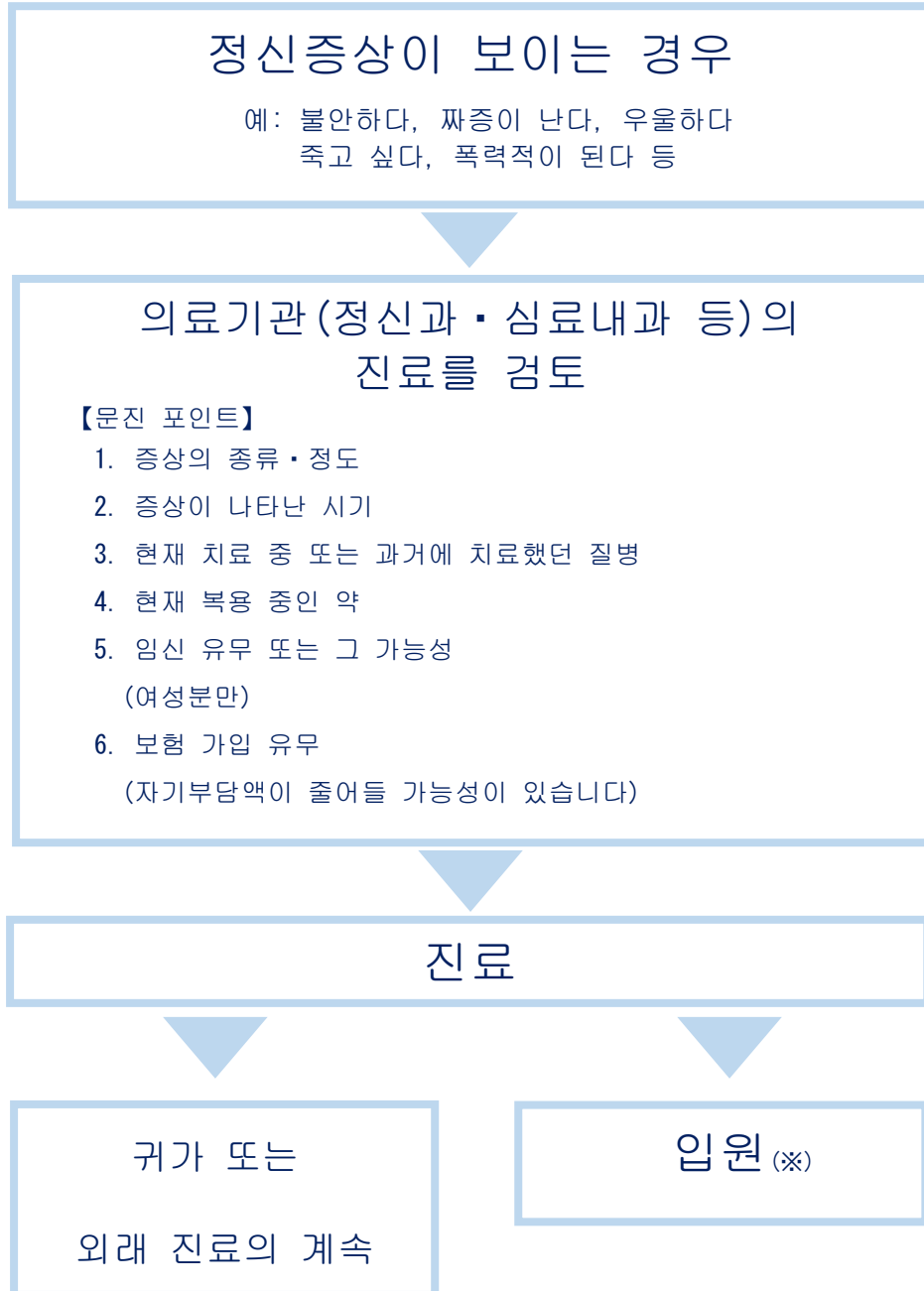


정신증상이 보일 경우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방법

1. 의료기관 진료 순서



의료비 결제는 현금이 일반적이지만 일부는 신용카드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 정신과 의료기관의 입원 형태 종류

일본에서의 정신과 의료기관의 입원 형태는 주로 정신보건복지법에 의거하는 아래의 유형이 있습니다.

(1) 임의 입원

환자 본인에게 입원할 의사가 있을 경우 임의 입원이 됩니다.

증상이 개선되고 의사가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나 환자 본인이 퇴원을 희망한 경우에 퇴원하게 됩니다.

(2) 의료보호 입원

의료와 보호를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환자 본인을 대신해 가족 등이 환자 본인의 입원에 동의할 경우, 정신보건 지정의의 진찰을 통해 의료보호 입원하게 됩니다. 연락 가능한 가족 등이 없을 경우는 가족 등을 대신해 지자체장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3) 응급 입원

의료와 보호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어도 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정신보건 지정의의 진찰을 통해 72 시간 이내에 한해 응급 입원 지정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4) 조치 입원

2명 이상의 정신보건 지정의의 진찰을 통해 자해를 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지자체 지사의 권한으로 조치 입원하게 됩니다.

조회처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보건복지부 정신·장애보건과
전화 03-5253-1111(대표)